

# 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10. 12.
- 제공자 : 농림부 가축방역과
- 과 장 : 김 창 섭
- 사무관 : 김 규 역
- 전 화 : 500-1933~4

이 자료는 2005년 10월 1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목 :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입법예고

□ 농림부는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, 반려(伴侶)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, 10.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.

※ “반려동물”은 ‘83.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「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」에서 “애완동물”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, 현재 미국·유럽·일본 등에서는 대부분 이 용어 사용

□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- 시·도지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전자칩을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대상·시행시기 등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동물에게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반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토록 하는 등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.

- 동물에게 금지되는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위반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.
-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.
- 동물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동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.
-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,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연령미만의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한다.

※ 미국·독일 등은 생후 90일미만의 어린 강아지 판매금지

-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.
-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94년부터 관계기관·단체의 의견과,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,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.
- 개정안이 확정·공포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, 관련업체와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,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붙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요지) 1부

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005. 10.

농 립 부

## 1. 개정이유

동물보호에 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고,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및 유기(遺棄)동물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며, 반려(伴侶)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국가 등의 동물보호시책 수립 의무화(제4조 관련)

- (1) 반려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
- (2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국민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
- (3)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·시행할 경우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### 나.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근거 신설(제4조의2, 부칙 제1조 관련)

- (1)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
- (2)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은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되, 시행시기·등록대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

- (3)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분실에 따른 소유자 확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

#### 다.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(제5조 관련)

- (1)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
- (2) 반려동물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, 동반외출시 목줄을 부착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
- (3) 반려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#### 라.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·확대(제6조 관련)

- (1) 현재 금지행위는 “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” 등으로 규정되어 위반시 처벌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
- (2)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, 도박·영리·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·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되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- (3)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

#### 마.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(제6조의2 관련)

- (1) 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

- (2) 동물의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, 난폭운전의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준수사항을 정함
- (3) 동물 운송에 따른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

**바.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(제7조 관련)**

- (1) 유기동물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불편 및 질병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
- (2) 기초자치단체장의 보호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농림부장관과 시·도지사의 보호시설 설치 또는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함
- (3)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할 경우 유기동물 보호와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**사.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(제10조 관련)**

- (1)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시행에 관한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- (2)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,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
- (3)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**아.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등 신설(제10조의2 관련)**

- (1)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
- (2) 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실험은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
- (3)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

**자. 반려동물 등 판매업·장묘업 제도화(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관련)**

- (1) 병약한 동물 판매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, 동물사체의 불법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
- (2)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시장·군수에게 등록을, 반려동물장묘업자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, 일정 연령미만의 동물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
- (3) 동물판매업·장묘업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경우 유기동물 발생억제,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**차.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(제12조 관련)**

- (1) 동물판매 등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관계법령,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

- (2) 동물판매업자·장묘업자와 그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
- (3) 관련업종 종사자가 동물관리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**카.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(제13조 관련)**

- (1)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임
- (2)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(공무원)과 명예감시관(민간)을 지정(위촉)하되,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- (3) 동물보호감시관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**타.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(제14조 및 제18조 관련)**

- (1) 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·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
- (2) 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, 소유자·판매자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
- (3) 학대행위 방지 등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